

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5. 4. 22.>

회수·인계·재활용의무 대상 전기·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

(제14조제2항 관련)

제품군	대상 제품
1.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	가. 냉장고,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. 세탁기, 러닝머신, 전기안마기
2.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	가. 디스플레이기기(100cm <sup>2</sup>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) 나. 이동전화단말기 다. 통신·사무기기(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) 라. 그 밖의 일반 전기·전자제품
3. 태양광 패널	태양광 패널